부속서 8-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 및 체류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출입국 조치란 외국 국민의 입국과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일시 입국이란 영구적 거주를 의도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2. 이 부속서는 제8.7조에 언급된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각 범주에 따라 정의되고, 그에 기재된 조건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부속서는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

국 영역으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5.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

6. 한쪽 당사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출입국 절차 또는 그 연장을 위한 완료된 신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7. 각 당사국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료된 신청을 접수한 후,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신청인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가. 신청의 접수, 그리고

나. 신청에 대한 결정, 승인되었을 경우 체류 기간과 그 밖의 조건을 포함

8.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으로부터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료된 신청을 접수한 후,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의 상태를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9.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출입국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무역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임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일시 입국의 허용

10.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자국의 약속을 제8.7조에 언급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하며, 그 약속은 그 당사국이 명시한 기업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과 제한을 명시한다.

1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항에 따른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가. 관련 출입국 절차를 위한 허용 당사국의 규정된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12.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정보의 제공

13. 제8.9조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이 부속서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출입국 절차에 대한 설명 자료를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나.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에 대한 요건을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그러한 요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설명자료, 관련 양식 및 문서를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에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나호에 따라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된 그 정보가 가능한 한 조속히 갱신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

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분쟁해결

14.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6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소진했을 경우

15. 제14항나호의 목적상, 다른 쪽 당사국이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개시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적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장과의 관계

16. 이 부속서, 제1장(일반 규정), 제16장(분쟁해결), 제17장(예외) 및 제18장(제도 및 최종 규정)과 제15.1조(공표)부터 제15.3조(행정절차)까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7.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